

목포시 공영버스 운송약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라 목포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와 여객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교통카드 사용 및 운송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버스”란 목포시가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말한다.
2. “운임”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여객의 구분별로 목포시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신고수리한 금액을 말한다.
3. “여객”이란 목포시 공영버스에 승차하여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전자적 방식으로 운임을 결제하기 위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말한다.
5. “교통카드 단말기”란 교통카드의 승·하차 정보 및 운임을 처리하는 기기로 ‘운전자조작기’,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로 구분된다. 다만, 승·하차문이 하나인 차량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말기가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를 모두 대신한다.
6. “무료환승”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한 여객이 하차 후 다른 노선의 버스로 갈아타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추가 기본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동의)

- ① 이 약관은 목포시 공영버스의 여객 및 휴대품 운송, 교통카드 사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이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령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여객이 목포시 공영버스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통카드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 발행 사업자 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수리, 목포시 운임 조정 고시 또는 사업개선명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차량 내 게시사항)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1. 운송사업자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 2. 운행계통도(노선안내도)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는 사항

제2장 운임

제6조(운임의 지불)

- ① 여객은 승차 시 목포시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수리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의 사용을 위해 차량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해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동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 ① 교통카드는 여객 1인당 1장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100원버스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운수종사자에게 미리 알린 경우에는 1장의 교통카드로 2명 이상의 운임을 함께 지불할 수 있다.
- ② 여객은 승차 시 승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환승 적용)

- ① 무료환승을 적용받으려는 여객은 하차 시 승차에 사용한 동일한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하며, 미접촉 시 무료환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무료환승은 하차단말기 접촉 시각부터 40분 이내 다음 승차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③ 동일 노선 간에는 무료환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장의 교통카드로 2명 이상의 운임을 함께 지불한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제시한 여객 1명에 한하여 무료환승을 적용하고, 나머지 여객은 정상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100원버스 요금 적용)

- ① 100원버스 요금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여객(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다)이 본인의 연령이 인증된 교통카드를 1인당 1장씩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00원버스 요금은 기본요금에 적용하며, 구간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아니거나 교통카드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원버스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승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운임의 환급)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유로 운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운송수단 또는 연계운송수단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부가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승차로 보아 정상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운임과 실제 지불한 운임의 차액(이하 “미납액”이라 한다) 및 미

납액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1.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지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연령 또는 자격에 맞지 않는 할인·감면 교통카드나 타인의 할인·감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장 운송책임

제12조(물품 등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완전히 넣은 반려동물은 제외한다.
3. 불결,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5. 별표 1에 따른 반입금지 음식물
6. 그 밖에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3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승·하차문, 비상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 중 승·하차문 또는 비상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물품의 판매·배부·권유·연설 등을 하는 행위
5.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차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8. 정해진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차 또는 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9. 차창 밖으로 손이나 얼굴 등 신체의 일부를 내미는 행위
10. 그 밖에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14조(여객의 의무)

여객은 다른 여객 및 차량의 안전, 질서유지를 위한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운송사업자의 차량, 운수종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여객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소지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해당 여객이 책임을 진다.
3. 여객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송의 거절)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차를 거절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제지 또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3. 음주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제한 또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운송하여야 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사람
6. 제6조에 따른 운임 지급의무 또는 제14조에 따른 여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6조(배상)

- ①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②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 위반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여객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운송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본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피해
2. 제13조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 또는 제14조에 따른 여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3. 제15조에 따라 정당하게 운송을 거절하거나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4.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 또는 휴대품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제4장 안전운송

제18조(사고 시의 조치)

운송사업자는 운송 도중 천재지변, 차량 고장, 교통사고 등으로 운송을 중단하거나 여객이 사상한 경우 여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여객 보호 및 편의 제공
2.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3. 대체운송수단 이용 안내 또는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4. 예비차 투입 등 운송 계속을 위한 필요한 조치
5. 사망자 또는 중경상자가 발생한 경우 가족이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6. 유류품 또는 휴대품의 보관·멸실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여객 보호와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장 차내 휴대품

제19조(휴대품의 허용중량, 크기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기준은 여객 1인당 중량 20kg 미만이고, 크기는 50cm×40cm×20cm 미만으로 한다.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휴대품은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제20조(휴대품의 보관책임)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휴대품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목포시 공영버스 운송약관 [별표 1]

공영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제12조 관련)

1. 반입금지 음식물

구 분	내 용
적용기준	가벼운 충격(의자 등에 부딪히거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썰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
적용대상	1) 일회용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2) 일회용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3) 여러 개의 일회용 용기*를 운반하는 상자 등에 담긴 음식물 4) 개봉된 캔 또는 뚜껑이 없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은 플라스틱 병 등 내용물이 새거나 흐를 우려가 있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 일회용 용기 : 일명 “테이크아웃 컵”

2. 반입허용 음식물

구 분	내 용
적용기준	차내에서 취식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소지하고 타는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
적용대상	1)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2) 뚜껑이 완전히 닫혀 내용물이 새지 않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3)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4) 밀폐형 텀블러, 보온병 등에 담긴 음식물 5)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